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35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274,5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96,7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98,4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¹⁾와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2024. 5. 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주위적 청구취지에 '원고' 및 '피고'의 표시가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2017. 12. 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 4. 20. ○○시 B 답 1,562㎡(이하 'B 토지'라 한다), C 답 5,478㎡(이하 'C 토지'라 하고, 위 두 필지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등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가산세포함)

과세대상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계
토지 B 외 1필지 7,040㎡ 경락공매	737,800,000	11,067,000	798,480	796,770	16,869,840

다. 이후 피고는 2022년도 ○○도 지방세 합동조사에 따라 2022. 3. 21.부터 2022. 3. 22.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차량 및 건설기계가 주차되어 있는 등 원고가 영농·유통·가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15,274,590원, 지방교육세 798,480원, 농어촌특별세 796,770원 합계 16,869,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2022. 4. 4.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화성시 D, 이하 같다)로 발송하였으나 2022. 4. 6.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자, 2022. 5. 3.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는데, 우편시스템 우편물검색화면에는 위 과세예고통지서가 2022. 5. 10. E(회사동료)이 수령하여 배달완료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 이후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서와 동일하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16,869,8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세목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본세	11,067,000	737,800	737,800	12,542,600
가산세	4,207,590	60,680	58,970	4,327,240
합계	15,274,590	798,480	796,770	16,869,840

마. 피고는 202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하였으나, 2022. 6. 20.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위하여 2022. 7. 6. 공고기간을



2022. 7. 6.부터 2022. 7. 20.까지로 정하여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이는 2022. 7. 21. 송달 간주되었다.

바. 원고는 2022. 10.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도지사는 2023. 1.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3. 3.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9, 10, 12,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절차적 위법사유

1)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위법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는 '수취인 부재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위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의 위법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절차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산세 부과 위법사유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과세예고통지가 없고 납세고지서도 송달된 사실이 없는바, 납부기한 자체의 고지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실체적 위법사유

1) 이 사건 처분 사유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한 후 바로 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의 용도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정부의 신생 에너지 장려 정책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작업을 한 것일 뿐 나머지 부분은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이고, 피



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에 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앞으로도 같다)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그 지방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지방세에 관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0380 판결, 국세에 관한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누168 판결,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22. 6. 8.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하였으나 2022. 6. 20.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²⁾, 이에 피고가 2022. 7. 6.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2주(2022. 7. 6. ~ 2022. 7. 20.)로 정하여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7. 21.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간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납세고

2) 을 제12호증(우편발송내역 및 공시송달 공문, 공고문, 공고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우편발송내역(제1면)상 2022. 6. 13.자 '폐문부재', 2022. 6. 20.자 '폐문부재' 사이에 2022. 6. 14.자 '미배달보관중수취인불명'의 기재가 있기도 하나, 그 기재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확인된 송달불능사유는 '폐문부재'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위 등기우편 반송사실, 반송의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살펴본다.



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임을 전제로 공시송달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지만,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한지 여부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시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제2호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피고가 2022. 6. 8.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2. 6. 20.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그밖에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요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



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나)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 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 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다)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 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등기우편물에 기재된 사무소에서 본인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였다는 우편집배원의 진술이 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그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을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으 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라)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 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지방세기본법 등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 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



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³⁾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미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한 이상 과세예고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되나, 위와 같은 법리는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3)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는 하였으나,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본 판결이다.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수령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우편물이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2020. 9. 20.자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2022. 5.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시스템 우편물검색 내역 상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2022. 5. 10. E이 수령하였으며, E은 수취인인 원고와 '회사동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된 임원은 대표이사 F, 사내이사 G, 감사 H(G과 H은 대표이사 F의 가족이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E'이라는 사람이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령인 중 하나인 원고의 회사직원(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예고통지서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수령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E 사이의 관계를 중단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E'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등 위 'E'이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수령인에 해당함으로써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가 취득세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자의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점에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위법 사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5

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포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박○○

 판사 성○○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이하 각 호 생략)

제28조(서류의 송달)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